안건1	**규약 해석에 관한 건**
주문	규약 제18조의 “재적”은 회의 소집공고일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

□ 근거 : 규약 제34조 (중앙위원회 기능) 11. 규약의 해석

□ 주문취지

○ 발전노조 규약 제18조에 따르면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있음

○ 재적의 의미 : 어떤 명부에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 수가 규약에 정해져 있더라도 선거 미실시, 사퇴등으로 정원보다 실제 인원이 적어도 그 실제수가 재적 숫자가 됨.

○ 의결과 관련해서는 특히 재적을 확인하는 ‘시기’가 중요한 바 합리적인 기준을 잘 마련해 두어야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음. 발전노조도 총회의 경우에는 총회공고일,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명부 확정일 등으로 기준시점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정함이 없더라도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역시 소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지난 10월 중앙집행부는 중앙위원의 재적 확정시기를 소집공고일이 아닌 중앙위원 선출년도 기준으로 재적수가 2년간 유지된다고 해석하며, 지난 10월 현장에서 요구했던 중앙위원회를 무산시킨 바 있음.

○ 반면, 본부는 소집공고일 기준으로 해석하는 등 내부에서 조차 일관성이 없음

○ 따라서 규약 제18조의 재적인원을 규약 34조11항에 의거 중앙위원회 해석을 통해 기준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음

안건2	각종 기금 집행 중단 및 부당집행기금 회수의 건
주문	집행부 임기 만료시까지 모든 기금의 집행을 중단한다. 단, 생계비와 호봉누락분 및 소수지부 지원금 지출은 예외로 한다. 본부별 1억씩 지급된 투쟁기금은 즉시 회수한다. 재정자립기금의 발전노조 운영비 전용을 즉각 취소한다. 발전노조 탈퇴자 4인에 대한 희생자구제기금 지급분을 즉시 회수한다.

□ 근거 : 규약 제34조 (중앙위원회 기능) 1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주문취지 : 발전노조 조합원수 감소에 비례해서 조합비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분간 시간이 가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로서의 발전노조를 사수하고자 한다면, 향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발전노조 집행부에게서는 이런 고민이나 노력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과 변함없는 수준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고, 마치 오늘만 살 사람처럼 농부의 씨앗과도 같은 각종 기금을 무책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분별하게 기금을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아래 3건의 기금 집행사례를 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제5차 중집회의(2011.6.29)에서 “재정자립기금으로 발전노조 창립 10주년 기념품을 전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재정자립기금 운용 규정 제3조(기금의 용도)에는 기금의 사용 목적을 3가지(① 발전노조 월 조합비 100만원 미만 지부 및 특별지부 재정자립을 위한 지원비, ② 발전노조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숙소 이전에 필요한 제반비용, ③ 기타 중앙위에서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결정한 사항)로 분명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은 위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 결정은 현장의 항의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항의와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재정자립기금이 선물비로 사용될 뻔 했습니다.

(2) 제10차 중집회의(2011.9.22)에서 “이준상과 박주석에 대하여 일시보상금을 선집행후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 승인을 받는다.”라고 결정하였고, 집행부는 두명에게 각각 2억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과 집행은 잘못되었습니다.
희생자보상규정 제24조에는 ‘일시보상의 사유발생, 시기 등의 결정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고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이 해고자의 당연한 청구권이 아니며, 대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2년 파업후 당시 사무처장이던 김인은 해고후 자발적으로 조합활동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며, 무책임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대의원대회에서 그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4억원의 돈을 누가 어떻게 회수할 것입니까?

(3) 제10차 중집회의(2011.9.22)에서 “본부별 조직 복원사업 계획에 따라 각 본부별 1억씩의 투쟁기금을 지원한다.”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본부별 조직 복원사업 계획 같은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투쟁기금 배분후 몇몇 본부가 일

상사업에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안건도 당시 남동본부장이던 여인철이 즉석에서 제안하여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인철과 지부장들은 9월 1일 본부중앙위원회에서부터 기업별노조 전환을 시도하였고, 여의치 않자 9월 29일에는 여인철이 직권으로 기업별노조 전환투표 총회 공고를 내었습니다. 투표가 부결되자 여인철과 그 일당들은 사퇴 하루 전인 10월 12일에 본부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지부별 조합원수 비례하여 기금 1억원 전액을 배분한다."는 결정을 하고, 즉각 지부별로 기금을 배분 해버렸습니다. 다음 날인 13일에 남동본부장 및 본부집행부 전원이 사퇴하면서 발전노조를 탈퇴하였고, 곧바로 기업별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남동본부에 간 1억원은 이후 지부장들이 기업별노조를 조직하는 자금으로 탕진되었습니다.
중앙집행부는 9월초부터 이미 이러한 남동본부의 움직임과 이후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여인철의 요구에 따라 투쟁기금을 배분했습니다. 또 안건 제안자가 9월 30일 중앙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석부위원장에게 여인철의 타임오프 해지를 요구했고, 수석부위원장은 그리 하겠다고 했지만, 탈퇴시점까지 여인철의 타임오프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여인철은 토론회 등을 빌미로 계속 현장을 휘젓고 다님). 남동 기업별노조 진행 과정에서 중앙집행부가 보여 준 태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4) 제15차 중집회의(2011.11.14)에서 "운영비(고정비)에 대해서 일정금액(15,000,000*3개월=45,000,000원)을 재정자립기금에서 대여를 받아 집행후 향후 대의원대회에서 예산.결산 승인을 받는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재정자립기금 운영규정 제6조(대여)[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예산승인을 거쳐 최대 1년 동안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처리한다. ① 발전노조 일반회계의 자금이 부족할 시]와 회계규정 제17조(잉여금 및 부족금의 처리)[매 회계 연도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재정자립기금 운용규정 17조의 내용은 대의원대회 예산승인을 거쳐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회계규정 제17조의 내용은 잉여금 및 부족금 발생시 대의원대회에 별도의 방안(조합비 인상 등)을 승인 받으라는 것이지 재정자립기금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명백한 규정위반입니다.

(5) 발전노조를 이미 탈퇴한 김백수, 송민, 최효경, 여인철 등의 전직 조합간부들에 대한 희생자구제기금 부당 지급함. ☞ 2006년 9.4파업으로 당시 쟁대위는 전원 해고되었고,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는 정직6개월로 재징계 하였습니다. 2008년 회사는 대상자들의 정직에 대한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전임자의 정직은 급여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노동부 해석을 제시하자 급여 삭감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가 다시 급여삭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급여를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최근 어떠한 공식 논의도 없이 10여명의 당사자중 4명에 대해 임금삭감 예상액(6개월분 임금)을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선지급하였습니다.

안건3	발전노조 정상화의 건
주문	1. 1월 14일(토)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안건 : 규약 및 규정 개정, 회계감사 보선. 기타 필요 사항) 2. 규약 및 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중앙위원들로 조직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 3. 1월 이내에 조기선거를 실시한다.

□ 근거 : 규약 제34조 (중앙위원회 기능) 1.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요청, 2. 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 19. 기타 조합사업상 중요한 사항

□ 주문취지 : 저는 현재의 발전노조가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합니다. 집행부는 발전노조를 지키려는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주기보다는 계속해서 절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조직을 하루속히 정상화시키고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조기선거를 시행할 것과 그를 위한 준비를 주문합니다. 제가 감히 발전노조가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를 간단히 나열합니다.

(1) 사측과 어용들의 조직파괴공작에 중앙과 본부 집행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많은 조합간부들의 일탈행위와 조직 장악력 부재로 인해 집행부에 대한 현장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① 현직 사무처장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수원으로 전적함

② 전현직 조합간부 다수가 앞장서 발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 설립을 주도하기도 함(정책위원장, 남동본부장, 중앙회계감사위원 3명중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 5명중 4명, 본/지부 조합간부 다수)

③ 위원장이 소속본부/지부에서조차 신뢰와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있음. 위원장 소속 본부인 남동본부에서 본부장이 기업별노조를 주도하였고, 소속 지부인 분당복합지부에서 기업별노조 찬성률이 압도적인으로 나옴. 이런 상태에서 발전노조 위원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조합원들의 일반상식과 감정을 거스르는 것임.

※지부별 기업별노조 전환 찬성율 (10.7)

지부	삼천포	영흥	영동	여수	분당	본사
조합원 수	366	335	144	131	106	99
찬성 (%)	66.9	19.6	69.9	70.2	75.8	90.2

(2) 최근 회의 결정사항들조차 제대로 점검/이행되지 못할 정도로 집행부 스스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① 제39차 중앙위원회(2011.4.8)에서 "[안건2호] 해복투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은 차기 회의에 상정한다. [안건3호] 희생자보상규정 개정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재논의한다."라고 하였으나, 금번 중앙위원회까지 상정되지 않음.

② 제15차 중집회의(2011.11.14)에서 "한미FTA와 연계하여 전력산업민영화(매각)반대, 전력재통합투쟁과 관련하여 대응팀(정책팀, 교선팀)을 구성하여 정치권(입법발의, 토론회

등) 및 홍보(대국민 홍보 및 조합원 교육 선전자료)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전력연대 차원의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대응하도록 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음. 12월 1일 제단체들이 주관한 [한미 FTA와 공공부문 긴급토론회]에 여러 노동조합들(가스, 집단에너지, 의료, 건강보험, 철도 등)이 토론자로 참여함. 발전노조는 참여를 요청받고도 참여하지 않음.

③ 제15차 중집회의(2011.11.14)에서 "조직개편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여 규약개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 수석부위원장, 김재현부위원장, 김영덕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간사), 정책위원장, 법규부장, 해복특위(이호동)"라고 결정하였으나,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음.

(3) 향후 발전노조가 걸어가야 할 길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몇십배 더 험난하고 고달플 것이 예상되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① 조합원수와 조합비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현재의 조직 체계(중앙-본부-지부) 운영이 적절한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② 향후 전임자수 축소에 대한 대책은?
(조합간부의 역할과 인원에 대한 고민 필요)

③ 위 내용 등과 관련된 규약 및 규정의 정비